

제6장

오피셜 등록규정

| | | | |
|----|-------------|----|-------------|
| 제정 | 1997년 1월 1일 | 개정 | 2011년 1월 1일 |
| 개정 | 1998년 1월 1일 | 개정 | 2012년 1월 1일 |
| 개정 | 1999년 1월 1일 | 개정 | 2013년 1월 1일 |
| 개정 | 2000년 1월 1일 | 개정 | 2014년 1월 1일 |
| 개정 | 2001년 1월 1일 | 개정 | 2015년 1월 1일 |
| 개정 | 2002년 1월 1일 | 개정 | 2016년 1월 1일 |
| 개정 | 2003년 1월 1일 | 개정 | 2017년 1월 1일 |
| 개정 | 2004년 1월 1일 | 개정 | 2018년 1월 1일 |
| 개정 | 2005년 1월 1일 | 개정 | 2019년 1월 1일 |
| 개정 | 2006년 1월 1일 | 개정 | 2020년 1월 1일 |
| 개정 | 2007년 1월 1일 | 개정 | 2021년 1월 1일 |
| 개정 | 2008년 1월 1일 | 개정 | 2022년 1월 1일 |
| 개정 | 2009년 1월 1일 | 개정 | 2023년 1월 1일 |
| 개정 | 2010년 1월 1일 | 개정 | 2024년 1월 1일 |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자동차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오피셜들에게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오피셜 등록규정에 따라 오피셜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며 본 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오피셜 라이선스

제2.1조 오피셜

KARA가 공인하는 대회에 심판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오피셜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과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책임과 권한, 임무가 정해지며 그 승급이나 자격이 주어진다.

제2.2조 오피셜의 구성

2.2.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분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사무국장 및 요원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medical)
- 사실판단관 (judge of fact)

제2.3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KARA의 국내심판원 라이선스 등급은 아래와 같다.

| 등급 | 구분 |
|--------|----------------|
| S+ | 심사위원 |
| S1 | |
| S2 | |
| A+ | 위원장급 |
| A1 | |
| A2 | |
| B1 | 선임급* |
| B2 | |
| C1 | 일반요원 |
| C2 / D | |
| E | 소방, 의료, 기타 특수직 |

*해당 등급의 인원은 입문종목 파트위원장으로 업무 수행 시 오피셜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입문종목: 카트, 집카나, 드래그, 드리프트, eSports 등)

제2.4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 2.4.1 오피셜 라이선스는 KARA가 지정한 전산 등록망(KISS)을 통하여 입력 항목을 빠짐 없이 기재한 후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2.4.2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및 승급 자격을 갖추었거나 KARA에 등록된 대회주최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대상자가 된다.
- 2.4.3 만 19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2.4.4 해외에서 활동한 경우 활동한 국가의 경력증명서나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4.5 외국인의 경우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KARA 사무국의 심사에서 한국어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 2.4.6 심판원 라이선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이외의 신청자는 KARA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4.7 KARA는 접수된 오피셜 신청이 받아들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미 수수료가 납부되었다면 이를 환불한다.

제2.5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2.5.1 국내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2.5.1.a 국내 C2, D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2.5.1.a.i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 2.5.1.a.ii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신규 또는 일반교육 수료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 2.5.1.a.iii 대회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 자. 국내 D 라이선스는 공인대회 2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6개월 이내 C2 라이선스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C2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다.
- 2.5.1.a.iv C2이상의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는 D등급을 신청 할 수 없다.
- 2.5.1.b 국내 S2
국내 대회 주최자, 조직위원회 혹은 공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KARA의 심사 위원 수련과정교육을 이수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5.1.c 국내 E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자.

제2.6조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2.6.1 국내 A1에서 A+로의 신청

- 2.6.1.a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KARA심사제 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2 국내 A2에서 A1으로의 신청

2.6.2.a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대회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2.6.2.b KARA는 상황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별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다.

2.6.3 국내 B1에서 A2로의 신청

B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온라인 중급과정(시니어, 안전) 2강의를 모두 이수 후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

2.6.3.a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대회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자. 단,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A2 라이선스 신청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6.4 국내 B2에서 B1으로의 신청

B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4.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4.b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에 3회 이상 참가하고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5 국내 C1에서 B2으로의 신청

C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온라인 중급과정(코스) 강의 이수 후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

단, B2 라이선스 신청은 C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6.5.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5.b 혹은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KARA가 인정한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5.bi 또는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6 국내 C2에서 국내 C1으로의 신청

C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6.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6.b 혹은, 24개월 이내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2.6.6.bi KARA가 실시한 현장 교육을 수료했거나

2.6.6.b.ii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받아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7 국내 S1에서 S+로의 신청

2.6.7.a S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중 KARA의 교육을 의무 참석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8 국내 S1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8.a 국내 S2 자격을 갖춘 자 중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8.b 국내 S2 취득 후 60개월 이내 공인 대회에서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2.7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 시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진다. 단, A2, A1라이선스는 등급 유지조건 미충족 시 관련 위원회 심의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 유지 또는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피셜은 KARA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상황에 따라 의무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7.1 국내 A2, A1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대회 3회 이상 참가

2.7.2 국내 B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3 국내 B2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4 국내 C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5 국내 C2

24개월 이내에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제2.8조 KARA 오피셜 교육 및 세미나 참가의 인정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참가는 공인 대회 1회의 참가로 인정하며 이는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및 등급 유지 자격에 적용될 수 있다.

제2.9조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10조 오피셜 교육

2.10.1 KARA는 오피셜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0.2 KARA는 라이선스 등급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특정 교육 이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11조 오피셜 교육의 의무

2.11.1 KARA의 오피셜 교육은 오피셜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오피셜은 라이선스 등급 유지와 승급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11.2 등급별 모든 오피셜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에 의무 참가(심사위원 포함) 해야 한다.

제3조 규정의 적용 및 시행

제3.1조 벌칙

3.1.1 오피셜은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 등 KARA가 수시로 공표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대회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되고, 벌칙은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3.1.1.a 경고

이 벌칙을 받을 오피셜에게 KARA는 서면으로 경고 이유와 내용을 통고한다.

3.1.1.b 등급 강등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의 라이선스 등급은 1단계 하향된다. 이 벌칙은 심사위원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1.1.c 자격 정지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오피셜 라이선스에 따르는 모든 자격과 권한이 정지되며 KARA 공인 대회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정지 기한 안에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라이선스 갱신은 정지 기간 만료 후에 가능하며, 제 1.6조의 등급 유지자격을 심의할 때 정지기간도 포함된다.

3.1.1.d 라이선스 취소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경과 기간 중에는 라이선스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KARA에서 정한 경과 기간이 지나면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나 취득 가능한 라이선스 등급은 KARA의 재량에 속한다.

3.1.1.e 제명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라이선스 신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3.1.2 비공인 대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제3.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 시 본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